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

2010. 11. 10



신규 방송사업 정책FT
[방송정책국]

목 차

I.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1. 신청서류 구성	1
2. 작성 및 제출요령	2
II.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5
1.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5
2. 서약서	5
3. 사업계획서	5
< 첨 부 >	
1. 각종 양식	17

I.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류 구성

- 승인 신청서류는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본문(목차 포함)과 본문의 요약문,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부속서류, 조건표 등 5종으로 구성
 - 본문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 순으로 작성하되, 300쪽(본문의 별첨은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함
 - 본문의 요약문은 본문과 별도로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하여야 함
 -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은 <양식 19>에 따라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부속서류는 본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승인 신청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
 - 조건표는 사업계획서 본문과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간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

【 조건표 작성 예시 】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본문 페이지	본문 제목	부속서류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p.2 ~ p.5	제2장 가.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	제1장 1-1-1. (제목)

2

작성 및 제출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함
- 승인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외부자문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자·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승인 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함
 - 계약서나 증빙서류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 금액 표기를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하는 경우, 각각 백원 또는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이를 별도로 적용한 때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함
 - 물가 : 신청공고일 현재의 불변가액
 - 환율 : 신청공고일 현재 최초로 고시된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대출확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하되,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현행 이자율을 하한으로 함
 - 예금이자율 : 사업자 평균 수입이자율로 하되,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를 상한으로 함
 - 감가상각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신규 투자시설에 대해 신청공고일 현재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고, 그 산정 근거(잔존가액,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제세공과금 : 신청공고일 현재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하되, 향후 적용할 세율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미래 세율 등을 적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위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 일람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한글문서(HWP)로(단, <양식 3>, <양식 4>, <양식 6>, <양식 11>, <양식 13~15>, <양식 17>은 MS-excel로 각각 작성), A4용지(210mmx297mm)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는 쪽수를 표시하고 목차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A4 규격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예정)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예 : 1/20)
- 신청 서류의 모든 날인은 인감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타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외국인 등 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본문, 본문의 요약문, 부속서류, 조건표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0부(단, 부속서류는 5부)와 CD 2세트를 제출하고,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은 원본 1부만 제출하되,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II.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

- 승인 신청서는 <양식 1>에 의하여 작성함

2 서약서

- 서약서는 <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며, 대표자 및 모든 구성주주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 단, 기존법인의 경우, 대표자,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서약서가 1장을 초과할 경우 서약내용을 각 쪽 상단에 재기술 후 기명날인하여야 함
 - ※ <양식 2>는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으로 함

3 사업계획서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가. 명 세

- 신청법인의 명칭, 구성주주의 소유 주식 수 등을 <양식 3>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 <양식 3>은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으로 함
-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공증된 법인정관(변경예정정관 포함),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법인설립 전인

경우 발기예정인 포함)이 기명날인한 정관(안), 법인설립계획서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편성책임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계획서 등에 이를 명기하여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 이력을 기술 하고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속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임원의 경우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나. 구성주주에 관한 사항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양식 3>에 기술된 출자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구성주주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
- ※ 주주의 권리·의무관계, 경영 협력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 <양식 3>에 기술된 출자금액 중 유상증자 예정 금액(1주당 액면금액 및 1주당 발행예정금액, 발행예정 주식수)을 별도로 기술하여야 함
-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기존법인과 각 유상증자 참여주주 간)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감증명서 첨부)
- 모든 구성주주 중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단,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회사설립을 적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가능)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만 해당)의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비법인 사단 및 비법인 재단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를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구성주주(최대주주, 대기업(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인 주주,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주, 외국인(외국법인)인 주주에 한함)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명칭을 <양식 4>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양식 4>는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으로 함

- 구성주주 중 주요주주(법인이나 단체에 한함)의 경우 주주별로 <양식 5>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구성주주 가운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일간신문 구독률 등에 대해서는 <양식 6>을 작성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자료

: ABC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 이사회 구성·운영현황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가.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

-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 방송법 제5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양식 7>에 기술하여야 함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등을 포함)을 기술하여야 함
- 재난방송 편성계획, 방송언어 순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에 대한 총괄적 사항(목표 및 비전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07년 ~ 2009년의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 <양식 8>, <양식 9>, <양식 10>에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사회적 기여계획은 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라.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주주구성의 다양성, 구성주주의 의지와 역량 등을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 중복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의 처분계획 또는 종편과 보도 중 사전 지정한 1개 사업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및 장애인 지원방안, 노약자·다문화 가정·외국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방송법 제87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계획(방송법 제89조) 등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자체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계획(방송법 제86조) 및 시청자 불만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 방향 및 전략, 목표와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방송분야별·장르별 편성 방향을 기술하고, 분야별·장르별 구체적 편성계획은 <양식 11>에 기술하여야 함
 - 편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주간 기본 편성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획의도, 장르, 제작원, 주 시청대상, 주요 내용, 연간 편성 편수·시간, 편당 시간·소요비용 등을 <양식 12>에 기술하여야 함
- HD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방송광고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편성규약에 관한 주요사항 등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고, 편성규약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나.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에 관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기술하고, 구체적 편성계획은 전체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고려하여 제작원별로 <양식 13>와 <양식 14>에 기술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기술하고, 제작비 산정 근거, 제작 인력 등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제작비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에 관한 계획을 기술하고, 제작비 책정 근거 등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 구매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매비용 산정 근거 등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 외주제작사,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 협력계획을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신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활용계획, 해외진출 및 국내·외 콘텐츠 판권 판매계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전략적 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가. 사업추진계획 및 경영전략

-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향후 5년간 방송시장 등을 전망하고 신청법인 목표 시장점유율 등을 적시하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신청법인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을 기술하여야 함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관계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사업운영계획을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인력소요 규모를 직급별 및 직능별로 기술(인력소요 산출 근거 명시)하여야 함
- 신규인력 충원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경력/신입, 자체/외부 등으로 구분)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및 예상 효과 등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투자액을 명시하여야 함

다. 납입자본금 규모

- 납입자본금 규모를 <양식 15>에 기술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 <양식 16>에 따른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와 실질자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기존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동 증자분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설립계획 및 유상증자 계획에서 현물출자 사항이 있을 경우

현물출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서, 현물출자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 자금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입약정서 등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향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를 계획한 경우 이에 관한 주요주주의 출자확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가 개인 등인 경우, 신청공고일 현재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 보유재산현황 및 납세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사옥 및 방송설비 구매·설치, 프로그램 제작비, 구매비 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의 자금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마. 사업성 분석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법인설립 등기시점(기존법인의 경우 변경등기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 등 각각의 재무제표를 연도별(최초연도는 분기별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추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인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신규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모두 제시하여야 함

- 추정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방법에 의한 순현재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DCF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방법)

바.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 및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및 기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기관(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경영효율화 증대를 위한 전략 및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제5장 재정적 능력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비율 등을 <양식 17>, <양식 18>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최근 4년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부속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위의 <양식 17>, <양식 18>이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최근 4년 이내에 합병(분할)한 법인의 경우 합병회사(분할회사)와 피합병회사(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모두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분할)계약서, 합병(분할)신고서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신청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용등급* (회사채 발행기준)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중 1개의 평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단, 주요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신용등급 자료를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환산 받아 제출할 수 있음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가.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 방송 사옥을 포함한 방송제작·송출 등 방송시설의 구체적 구축 계획 및 시설 구성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방송시설 구축 및 투자계획을 제작, 송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세부설비목록, 관련 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시설 운영계획, 그에 따른 조직 구성 등을 기술하여야 함

나.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 방송콘텐츠 제작 및 편집기술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첨단 방송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방안과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가. 방송산업 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 방송인력 양성 계획 등 방송발전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협력방안, PP와의 상생 협력방안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나.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 환원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다. 출연금

- 출연규모, 출연시기, 출연방안, 출연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양식 2]

서 약 서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는 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서약하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약합니다.

1.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구성주주가 일체 없습니다.
2.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계약서 이외에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3.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전문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 하겠습니다.
5. 본 신청법인의 각 주요주주는 상속·법원판결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본 신청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승인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사업계획이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법인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인)

구성주주명 : _____ (인)

[양식 3] 신청법인의 명세 [엑셀]

□ 신청법인의 명칭 :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형 2)	출자액 ³⁾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주요 업종 ⁴⁾	주소 ⁵⁾	특수 관계 여부 등 ⁶⁾	중복 참여 여부 ⁷⁾	비고 ⁸⁾
			금액 (단위: 백만원)	주식 수	법인명 또는 성명 (특수 관계자 포함 지분율)	주소 (법인등 록번호 또는 주민등 록번호)					
합 계											

- 1)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펀드 등)의 경우 그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하여 기재하고, 단체명을 병기할 것
- 2) 유형 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 비율)·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소유비율)·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외국인·외국법인·비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 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출자액은 법인 설립 시(기존법인일 경우 유상증자 후) 법정자본금(액면금액 기준)으로 할 것
- 4) 주요 업종 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 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병기할 것
- 5) 주소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할 것
- 6)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예, (주)OOO의 임원)을 표기하고, 특히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간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할 것
- 7) 구성주주(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다른 신청법인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 하기로 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중복참여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법인 명과 지분율을 기재할 것(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중복참여한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 명을 포함하여 기재)
- 8) 비고란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양식 4]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엑셀]

구성주주의 명칭 :

방송법 시행령 조항		해당 특수관계자 명 ¹⁾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구성주주가 개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1호가목		
	제3조제1항 제1호나목		
	제3조제1항 제1호다목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제3조제1항 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2호다목		
	제3조제1항 제2호라목		

1) 특수관계자 별로 작성

[양식 5]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명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생년월일 : ○ 주요이력 : (학력, 경력 등) 					
이사회 구성	※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성명, 생년월일 및 주요이력을 기술					
연혁	※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사업목적	※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주요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주요주주	법인명/성명	지분율	주요 업종	대표자	최다주주	주소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요조직 내지 회원 현황 등을 단체 성격에 부합하게 기술

[양식 6]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 [엑셀]

□ 신청법인 명칭 :

구성주주 명칭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	총 가구수	구독률	매체 교환율	환산 시청률	시청률의 합	환산 시청점 유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16,916,966		0.49		34.927 %	
계							

※ 구성주주 중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함

※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는 제출한 2009년도의 유가판매부수 중 가구대상 판매부수로 계산함

※ 구독률과 환산 시청점유율 계산은 소수점 네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세 자리 까지 산정

[양식 7] 시청점유율 합산 대상

7-1. 신청법인 본인

신청법인 명 ¹⁾	운영 채널(TV) ²⁾

- 1) 기존법인의 경우만 해당
- 2) 신청법인이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7-2.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자

신청법인 명 ¹⁾	특수관계자 명 ²⁾	운영 채널(TV) ³⁾	특수 관계 내용 ⁴⁾

- 1) 기존법인 이외에 설립예정법인도 포함
- 2)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만 해당(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여 특수관계 파악)
- 3) 특수관계자가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4)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의 특수 관계 내용 기재(방송법 시행령 제3조 중 해당 조문 명시)

7-3. 신청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

신청법인 명 ¹⁾	타 방송사업자 명 ²⁾	운영 채널(TV) ³⁾	소유 지분율 ⁴⁾

- 1) 기존법인의 경우만 해당
- 2)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만 해당
- 3) 타 방송사업자가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4)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의 지분율을 기재

7-4. 신청법인의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신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

신청법인 명 ¹⁾	일간신문 경영법인 명 ²⁾	특수관계자 명 ³⁾	특수 관계 내용 ⁴⁾	소유 지분율 ⁵⁾

- 1) 기존법인 이외에 설립예정법인도 포함
- 2)~4) ① 일간신문 경영법인만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2) 항목만 기재, ②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특수관계자만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2)~4) 항목을 기재
 ※ 일간신문 경영법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모두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위의 ①, ②와 같이 작성
- 4) 일간신문 경영법인과 특수관계자의 특수 관계 내용 기재(방송법 시행령 제3조 중 해당 조문 명시)
- 5) 일간신문 경영법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예정인) 신청법인의 지분율을 기재

[양식 8]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실적

법인 명 ¹⁾	일 자 ²⁾ (기간)	지 역 ³⁾	유 형 ⁴⁾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⁵⁾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시·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4)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5)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9]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사회적 기여실적

법인명 ¹⁾	일 자 ²⁾ (기간)	유 형 ³⁾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⁴⁾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1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적 기여실적

법인명 ¹⁾	일 자 ²⁾ (기간)	유 형 ³⁾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⁴⁾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11] 방송분야별·장르별 편성계획 [엑셀]

(단위 : 분)

분야	장르 ¹⁾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 ²⁾	비율 ³⁾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보도	뉴스										
	기획										
	보도										
	소계										
교양	다큐										
	문화										
	시청자 참여										
	소계										
오락	드라마										
	스포츠										
	영화										
	소계										
총 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 양식에 기재된 장르는 예시임

2)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3)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양식 12] 주요 프로그램 명세 (가로표로 작성)

(단위 : 분 / 천원 / 편)

연도 ¹⁾	프로그램 명	장르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제작원 ²⁾	주 시청대상	편당 시간	편당 소요 비용 ³⁾	연간 편성 편수 및 시간
2011									
소계									
2012									
소계									
2015									
소계									
합계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작성

2) 제작원은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로 구분하여 기재

3) 소요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양식 13] 제작원별 편성계획(1) [엑셀]

(단위 : 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 간 ¹⁾	비 율	비 용 ²⁾	시 간	비 율	비 용									
자 체 제 작	순수 자체 제작 ³⁾														
	공동 제작 ⁴⁾ 소 계														
외주제작 ⁵⁾															
	특수 관계자 외주 제작														
구 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 계														
총 계		100 %			100 %			100 %			100 %			100 %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의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업자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 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1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양식 14] 제작원별 편성계획(2) [엑셀]

(단위 : 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 ¹⁾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 계			100%		100%		100%		100%		100%

※ <양식 11>, <양식 13>와 일치하게 작성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양식 15]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 (엑셀)

□ 신청법인 명칭 :

1.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

구분			금액 또는 주식수
납입 자본금	①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②	설립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① x ②	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	

2.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의 경우 :

구분			금액 또는 주식수
실질 자본금	①	실질자본금(백만원)	
유상증자	②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③	유상증자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④ = ② x ③	유상증자 예정금액 총계(백만원)	
총계	① + ④	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	

※ 실질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 기준)은 방송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함

상기 사항은 관련 부속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16] 신청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승 인 구 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신청자 제시 자본금액(a-b)		자산총액(a) :	부채총액(b) :

진단결과 내역 (진단기준일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 단 의 건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자 산		고 정 부 채		
자산총계(I)		부채총계(II)		
부실자산(IV)		자 본 금		
실질자산(V) (I-IV)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VI)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VII) (V-VI-II)		자 본 조 정		
		자본총계(III)		
겸업자본(VIII) (c-d)		겸업자산(c) :		
		겸업부채(d) :		
방송채널사용사업실질자본 (VII-VIII)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

기업진단내역서

신청법인 명 :

(단위 : 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단기금융상품 ③ 유가증권 ④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⑤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⑥ 미 수 금 - 대손충당금 ⑦ 미수수익 - 대손충당금 ⑧ 선 금 금 ⑨ 선급비용 ⑩ 이연법인세차 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① 상 품 ② 제 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의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투자유가증권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③ 보증금 ④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⑤ 장기성매출채권 -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충당금 ⑥ 투자부동산 ⑦ 기타의 투자자산 - 평가충당금 (2) 유형자산 ① 토 지 ②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③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④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⑤ 방송설비 - 감가상각누계액 ⑥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⑦ 건설중인 자산 ⑧ 기타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① 영 업 권 ② 공업소유권 ③ 광 업 권 ④ 어 업 권 ⑤ 방송프로그램 ⑥ 기타의 무형자산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겸업고정자산)					
자 산 총 계 (겸 업 자 산)					
1. 유동부채 ① 매입채무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 수 금 ⑤ 예 수 금 ⑥ 미지급비용 ⑦ 미지급법인세 ⑧ 미지급배당금 ⑨ 유동성장기부채 ⑩ 선수수익 ⑪ 부채성충당금 ⑫ 이연법인세대 ⑬ 기타의 유동부채 (겸업유동부채) 2. 고정부채 ① 사 채 - 사채발행차금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 현재가치할인차금 ④ 부채성충당금 ⑤ 기타의 고정부채 (겸업고정부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부 채 총 계 (검 업 부 채)					
1. 자 본 금 ① 보통주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1) 자본준비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 ④ 기타 자본잉여금 (2) 재평가적립금 3.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① 사업확장적립금 ② 감채적립금 ③ 배당평균적립금 ④ 결손보전적립금 ⑤ 기술개발적립금 ⑥ 기타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4.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전환권대가 ⑤ 신주인수권대가 ⑥ 미교부주식배당금 ⑦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 ⑧ 해외사업환산차 (겸 업 자 본)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양식 17]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3년간 주요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엑셀]

구 분		() 회사	() 회사	() 회사
(1)자기자본순이익률	2007년			
	2008년			
	2009년			
(2)부채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3)총자산증가율	2007년			
	2008년			
	2009년			
(4)(현금,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對 투자(출자)금액				
(5)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				
(6)신용평가등급				

1) 재무비율 계산식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x 100(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임)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x 100(부채, 자본의 금액은 기말잔액)
-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x 100] - 100(자산의 금액은 기말잔액)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자본은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 말 금액으로 하며, 투자(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 내부잉여현금을 통한 2011년도 투자예정금액(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할 것)
-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기존법인의 경우,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對 투자(출자)금액 비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투자(출자)금액] x 100
-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 비율 = (자기자본/투자(출자)금액) x 100

3) 합병법인의 합병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4) 분할법인의 분할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 후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5) 신용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사항은 관련 부속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18]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주요 항목 [엑셀]

□ 법인 명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재무상태표 항목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자산				
	부채				
	자기자본 ¹⁾				
손익계산서 항목	당기순이익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를 의미

상기 사항은 관련 부속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19] 시청자의견청취용 요약문

신청법인명 :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계획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제5장. 재정적 능력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